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년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가. 선서문을 조정하며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선서문 문구를 조정하고,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
(안 제2조제3항, 별표 1, 별표 1의2)
- 나.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안 제18조의2, 별표 4)
- 다. 다음 연도 연가 사용 기준을 규정(안 제19조제6항)
- 라.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안 제20조제1항)
- 마.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는 조항을
삭제(안 제24조)
- 바.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정
(안 별표 3)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현행	개정안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u>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삭제></p>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 ○ ○ ○ ○ ○
실·국별 의견수렴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10.8.11~9.6 - 방법 : 의견수렴		“의견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10.8.11~9.6 - 방법 : 시보 및 인터넷게재		“의견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 제7조의3(특별휴가) ○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0조(징계의 종류) ○ 제71조(징계의 효력)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취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뇌우치게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⑦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할 8할(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10할)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국가기술훈련법」에 의한 자격증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 제외한다. (5)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8할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등 경력은 5할 이내, (3)과 (4)의 경력은 8할 8할. 다만, (1의2)의 경력은 5할, (1의3)의 경력은 10할
	다. 그 밖의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3)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할, 다만, (7)의 경력은 5할